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진 천 군 수
제출년월일	2021년 11월 15일

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69

제출년월일 : 2021. 11. 15.
제 출 자 : 진 천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22년도 시군종합평가 평가지표 중 하나인 기획정비과제에 ‘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의 관람료 감면규정 미비’가 포함됨에 따라, 실제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람료를 무료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운영 현실을 반영하고 평가에 대응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○ 관리자의 업무 중 “관람료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” 삭제

○ 관람료를 무료로 규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-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제55조 (2020.12.31. 시행법령)

나. 사전협의 또는 승인

○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○ 사전협의

- 사전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다. 기타 참고자료

(1) 입법예고 : 2021. 10. 14. ~ 2021. 11. 4. (의견없음)

(2) 비용추계서 : 첨부제외 사유서 붙임

(3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 : 2021. 11. 10. 원안의결

붙임 1. 일부개정조례안
2. 신구조문대비표
3. 관계법령 등 발췌문
4.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진천군 조례 제 호

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관람료) 길상사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관리업무) 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. 1. ~ 4. (생 략) 5. 관람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6. (생 략)	제3조(관리업무) -----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6. (현행과 같음)
제8조(관람료) 군수는 길상사를 관람하는 자에게 대하여 「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	제8조(관람료) 길상사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.

관계법령 등 발췌문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

[시행 2020. 12. 31]

제55조(관람료의 징수) ① 도지정문화재, 도등록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의 소유자·보유자나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12. 31.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·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**조례명 : 진천군 길상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○ **첨부제외 관련규정**

- 「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1항

> **제12조(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)**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
>
>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
>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>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○ **사 유**

- 「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1항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첨부 제외 대상임

○ **작성자**

문화관광과장 남 은 숙